

코람코퍼스텝송도리테일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8 호 신탁계약서 신구조문 비교표

| 조항 | 구 | 신 | 비고 |
|------|--|--|--|
| | [제정 2012.8.23], 시행일 2012.8.23 [일부개정 2012.10.30], 시행일 2012.10.30 [일부개정 2014.05.15], 시행일 2014.05.15 | [제정 2012.8.23], 시행일 2012.8.23 [일부개정 2012.10.30], 시행일 2012.10.30 [일부개정 2014.05.15], 시행일 2014.05.15 [일부개정 2016.04.30], 시행일 2016.04.30 | |
| 제22조 | 제 22 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~④ <생략>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⑥~⑦ <생략> | 제 22 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①~④ <생략>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동산과 관련된 효율적인 자금결제 및 부동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입출식계좌는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30> ⑥~⑦ <생략> | 신탁업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을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나(법 제246조 제5항),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함(시행령 제268조 제4항제1호). 집합투자계약상에 부동산과 관련된 효율적인 자금결제 및 부동산 관리업무에 필요한 입출식계좌는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있다'는 문구를 명시하여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를 없애고자 함. |
| 제33조 | 제 33 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개정 2012.10.30> 1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② <생략> | 제 33 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개정 2012.10.30> 1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3.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<신설 2016.4.30> ② <좌동> |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신설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 (2016.02.17 변경, 2016.04.30 시행) |
| 부칙 | 제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| |

| | | | |
|--|---|--|--|
| | 제1조(개정 시행일) 이 신탁약관 개정안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1조(개정 시행일) 이 신탁약관 개정안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| 제1조(개정 시행일) 이 신탁약관 개정안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1조(개정 시행일) 이 신탁약관 개정안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제1조(개정 시행일) 이 신탁약관 개정안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| |
|--|---|--|--|

*** 관련법 조문**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2조 변경 관련 조항 | <p>자본시장법 제246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9.2.3., 2013.5.28.>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68 조(증권의 예탁 등) ④ 법 제 246 조제 5 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09.2.3., 2011.9.30., 2012.6.29., 2013.8.27., 2015.10.23.></p> <p>1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 |
| 제33조 변경 관련 조항 | <p>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(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<개정 2016.2.17.></p> <p>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,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일 것</p> <p>2.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(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.</p> <p>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p> |

시행일: 2016. 4. 30.